



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18.8.18.)에 따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이하 “유전자원법”)이 2018.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병원성 미생물 자원 포함)에 대한 접근 및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절차 준수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에서 관련 신고 및 상담 등(헬프데스크 운영, 043-719-6885)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유전자원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붙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단 비교) 1부. 끝.



질병관리본부청



수신자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한국당과학회,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 대한의진균학회, 기초간호학회, 한국미생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한국예방수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화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광과학회, 한국균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생명과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인간프로테오믹스, 한국화학공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동물위생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오로생식기감염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동물병리연구회,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보건연구사	병원체자원관	감염병연구센터	전결 2018. 8. 27.
정향민	리TF팀장	황규잠	터장 지영미

협조자

시행 백신연구과-1477 (2018. 8. 27.) 접수

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병원체자원 관리TF / <http://cdc.go.kr>

전화번호 043-719-6872 팩스번호 043-719-6680 / hmcheong@nih.go.kr / 대국민 공개